

(9) 용	도	
(10) 용	법 및 용	량
(11) 포	장 단	위
(12) 보	존 기	준
(13)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	(별첨)	
위와 같이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의 검토를 의뢰합니다. 년 월 일		
귀 하		의뢰인 (인)
구비서류 : 1. 검 체 2.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 (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)		
기 재 상 : 1. 의뢰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(1), (4)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주의사항 성명을 기재한다.		수 수 료 원

2903-83B
1982. 3. 3. 승인

自家品質基準 및 規格檢定基準의 處理指針

— 國立保健院 告示 第 3 號에 따른 措置 <1981. 7. 1> —

1. 趣 旨

이 指針은 食品衛生法 施行規則 第 4 條 第 5 項에서 自家品質基準 및 規格의 檢定基準은 “별표 1과 같다”가 削除되고 “國立保健院長이 정하여 고시한다”로 改正(1983. 1. 15)됨에 따라 檢査機關의 적정한 검정及 民願業務處理에 便宜를 圖謀하기 위한 것이다.

2. 目 的

이 指針은 食品 및 添加物의 自家品質基準

및 規格의 作成과 檢査機關의 檢定處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하여 業務處理의 統一을 기함에 있다.

3. 對象品目

食品衛生法 第 6 條 第 2 項과 施行規則 第 4 條 第 1 項의 規程에 의하여 自家品質基準 및 規格을 設定하여야 할 品目은 다음의 製造業에서 製造하는 食品 및 添加物과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食品 및 添加物(다만, 食肉, 바

나나 등의 自然食品은 除外)로 한다.

가. 茶類製造業

나. 인스탄트食品 製造業

다. 營養등 食品製造業

라. 麵類製造業

마. 食用油脂製造業

바. 豆腐類製造業

사. 糖類製造業

아. 添加物製造業

4. 記載事項

用語, 記號 등은 原則的으로 食品등의 規格 및 基準과 食品添加物の 規格 및 基準(이하 “公典”이라 한다)에 준하며 記載項目 및 要領은 다음과 같다.

가. 製品名

製品의 名稱을 記載하되 加급적 原料物質과 相關하여 製品의 特性과 目的을 나타낼 수 있도록 表示한다.

나. 成分 및 配合比率

(1) 原料成分 및 物質은 原則的으로 公典에 收載된 規格品을 使用하여야 하며 公典에 收載되지 아니한 物質(天然添加物등)을 使用하고자 할 때에는 安全性에 關한 充分한 資料를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社會通念上 食品의 原料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.

(2) 配合比率은 百分率로 표시하되 百分率로 表示할 수 없을 경우에는 力價, 單位, %, 및 色價등으로 表示한다.

(3) 成分 및 配合比率의 百分率 表示에 있어서는 原料使用量의 合計를 100%로 하고 微量 添加하는 添加物등은 그 量을 記載하는 것이 百分率 構成에 意味가 없으므로 品名만을 記載한다. 다만, 添加物일지라도 使用基準이

정하여진 것은 使用基準에의 適否를 判斷하기 위하여 使用量을 記載하되 百分率에는 包含시키지 않는다.

다. 起源

起源은 그 原料成分 및 물질의 生成, 採取, 抽出, 反應 또는 製造, 加工 등의 過程을 말한다.

라. 製造方法

輸入品으로서 製造工程을 確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省略할 수 있다.

5. 基準 및 規格의 檢定基準

가. 成分規格

品質管理上 필요한 成分規格項目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. 다만, 製品의 特性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項目은 省略할 수 있으며 品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項目을 追加하여 合理的으로 調整할 수 있다.

(1) 食品의 成分規格

(가) 砒素

食品公典의 제 3. 食品 一般에 대한 規格및 基準중 1. 砒素項에 準한 것임.

(나) 重金屬

食品公典의 제 3. 食品 一般에 대한 規格및 基準중 2. 重金屬項에 準한 것임.

(다) 異物試驗

食品公典의 제 3. 食品 一般에 대한 規格및 基準중 5. 異物項에 準한 것임.

(라) 添加物

添加物중 위생상의 重要도를 고려하여 保存料, 酸化防止劑, 人工甘味料, 타알色素를 規定한 것이므로 이를 使用한 경우에 한하여 設定한다.

(마) 成分含量

① 製品의 特性에 따라 대체로 一般成分 등

을 다음 要領에 의하여 設定한다.

㉗ 茶類: 水分, 灰分等(液狀製品은 除外)

㉘ 인스탄트食品: 水分, 粗蛋白質等

㉙ 營養等食品: 水分, 粗蛋白質等(無機成分 및 비타민類를 添加하였을 경우에는 選定하여 設定함)

㉚ 麵類: 水分, 粗蛋白質等

㉛ 食用油脂: 現行 食用油 規格項目에 準하되 食用精製加工油脂(硬化油, 分別油, 에스텔 交換油)는 水分, 酸價 過酸化物價等

㉜ 豆부類: 灰分, 粗蛋白質等

㉝ 糖類: 水分, 糖度(…糖으로서) 등

㉞ 輸入食品: 製品의 特性에 따라 設定함.

② 成分含量은 다음과 같은 許容限度 範圍內에서 設定함을 原則으로 한다.

成分含量(% , mg% , IU/100g등)	許容限度
30 이상	10%(+또는-)
20 이상	20%(+또는-)
10 이상	30%(+또는-)
5 이상	40%(+또는-)
1 이상	50%(+또는-)
1.0미만	90%(+또는-)

㉗ 許容限度의 적용에 있어 水分, 灰分등과 같이 上限線을 規制한 것은 +%를 적용하고 粗蛋白質등과 같이 下限線을 規制한 것은 -%를 적용한다.

㉘ 食用油의 比重등과 같이 下限 내지 上限 値로 設定한 것은 위의 規定을 적용하지 않는다.

㉙ 最低基準値(1.0미만) 이하의 微量成分에 있어서는 그 特殊性을 고려하여 위의 表의 規定에서 除外할 수 있다.

㉚ 成分含量의 數値는 사사오입하여 表記한다.

(바) 其他

製品의 特性이 인정될 때 衛生的인 側面에서 적절히 設定한다. 예컨대 製品의 衛生管理

上 微生物項目의 設定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細菌 또는 大腸菌群을 設定할 수 있다.

(2) 添加物의 成分規格

(가) 砒素 및 重金屬의 許容限度는 食品添加物公典중 混合製劑의 規格에 準한 것임.

(나) 特性이 인정될 때 납, 카드뮴, 鹽化物, 黃酸鹽, PH, 比旋光度, 强熱殘留物 등의 項目을 設定한다.

6. 補完 및 是正

補完 및 是正措置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補完

(1) 製品名

(가) 製品의 內容物과 相異할 때

(나) …()과 같이 2가지 製品으로 혼돈하기 쉬울 때

(나) 混合製劑가 單一製品으로 誤認될 수 있을 때(添加物)

(라) 製造會社가 제시한 製品名을 그대로 表示하지 못한 경우(수입품)

(2) 成分 및 配合比率

(가) 成分內容이나 配合比率이 分明하지 아니하거나 맞지 않을 때

(나) 食品에 使用하는 原料나 添加物이 無水 또는 結晶, 精製 또는 結晶 등으로 分類되어 있는 成分이 그대로 記載되지 않았을 때

(3) 起 源

起源이 누락되었거나 未備할 때

(4) 製造方法

製造工程이 非衛生的이거나 불합리할 때

(5) 用途 및 使用量

食品添加物 規格基準의 使用基準에 맞지 않을 때

(6) 成分規格

必要한 項目이 누락되었거나 規格設定値가

檢討機關의 分析值 또는 提出된 資料와 比較하여 불합리할 때

(7) 試驗方法

(가) 必要한 試驗方法이나 根據資料가 누락되었을 때

(나) 提示된 根據資料와 相異하거나 根據資料가 不合理할 때

(8) 基準 및 規格 提出上의 留意事項

(가) 製品에 대한 一般成分 分析值가 누락되었거나 未備할 때

(나) 基準 및 規格變更時 이미 檢定을 필한 寫本과 變更하고자 하는 事項의 對備表를 提出하지 아니하였거나 不合理할 때

(다) 原料構成, 用途, 目的, 劑形(品質保存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 除外) 등에 있어서 醫藥品과 혼돈할 우려가 있거나 食品으로서 妥當性이 認定되지 아니할 때

(9) 其他

(가) 위 각항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것으로

當院 告示 第3號 “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의 검정기준”에 의한 內容이 누락되었거나 不合理할 때

(나) 위 각항의 檢討에 있어서 資料가 未備하거나 提出된 資料가 不充分하여 檢討에 어려움이 있을 때

나. 是 正

(1) 用語, 記號 또는 一般的인 記載要領을 公典에 準하지 아니하였을 때

(2) 內容上 단순한 脫字나 誤字등이 있을 때

(3) 成分名稱이 公典의 名稱 또는 根據資料와 相異하게 表示되었을 때

(4) 性狀이 試供品과 相異할 때

(5) 不必要한 規格基準이나 試驗方法의 削除만으로 是正할 수 있을 때

(6) 成分規格中 砒素, 重金屬, 添加物 등의 設定值가 許容值를 超過하였을 때

(7) 위 각항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것으로 檢討結果 輕微한 事項으로 認定될 때

第70號 食品工業

1970年 10月 18日 登錄 卍一第355號

1983年 8月 31日 發行(8月號)

發行兼 編輯人 許 昌 成
印刷人 鞠 正 鎬

發行處·社團 法人 韓國食品工業協會

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4街 125의 1

(進洋아파트 610호)

(265) 8760, (266) 6035

印刷處·正和印刷文化社 (隔月間·非賣品)

TEL (363) 4595·4596

□ 본지는 한국도서·잡지윤리위원회 실천강령을 준수한다.